



제288회 임시회
2010. 3. 15.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0년 3월 2일
- 회부일자 : 2010년 3월 3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의 종류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표창시 함께 수여하는 부상의 종류를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제명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변경함

나. 표창대상을 충청북도 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단체로 정함(안 제2조)

다. 표창의 종류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그에 따른 수여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라. 표창권자를 교육감 및 교육장 등으로 정함(안 제8조)

마. 표창시 함께 수여할 수 있는 부상(副賞)의 종류를 구체화(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함(안 제9조제2항)

바.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공적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사. 표창권자는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한 표창기회를 부여하도록하는 사항을 신설함(안 제14조)

아.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 등 사유로 직접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유족 등 대리자가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함(안 제15조)

자. 본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장의 표창 수여시 이 조례를 준용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7조)

아. 다른 조례의 개정

본 조례 제명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부칙에서 개정하고자 함

차.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함

1) 띄어쓰기

- 항 번호(①, ②) 다음에는 한 칸 띄고 본문을 씀

2) 용어정비 등

- 의한, 의하여, 의한다 → 따른, 따라, 따른다
 -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 제○조에 따라
- 다음 각호의 1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범위내에서 → 범위에서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교육인적자원부의 조례 표준안('07.10.17)을 기초로 하여,

· 충청북도교육감 및 교육장 등이 행하는 표창의 종류를 「정부표창 규정」의 표창의 종류와 일치시키고,

· 표창에 따른 부상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 본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의 표창 권한 및 절차 등의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